

의안번호	제 105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8. 18.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18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개 정 이 유

주택개량사업은 종전에 시장이 직접 농어민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은 종결되고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만 시행중으로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신청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3인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등을 첨부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나 시장이 농어민에게 직접 융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이 종결되어 이를 삭제.
- 나. 주택개량사업중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,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, 변소개량융자금,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사업은 현재 사업을 사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항목을 삭제 (안제9조).
- 다. 기타 자금의 운용과 관련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.

3. 참 고 사 항

-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
 -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- 서산시규제개혁심의회
 - 기감 05090-937('99. 6. 25) 자치법규(규정)별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됨
- 입법예고('99. 7. 21) 결과 : 특기할 사항없음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보조금,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”을 “농업협동조합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보조하거나 융자하여”를 “융자하여”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”을 “주택개량사업”으로, “보조금 또는 융자금”을 “융자금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”를 “융자할 경우”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택개량사업(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)

가. 이율 :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

나. 상환방법 :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
<p>③용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급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1. 주택개량사업</p> <p>가. <u>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</u> <u><개정, '97.10.28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율 : <u>제정부용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</u> • 상환방법 : <u>5년 거치 15년 체중상환</u> <p>나. <u>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율 : <u>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</u> • 상환방법 : <u>5년 거치 15년 체중상환</u> <p>다. <u>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율 : <u>무이자</u> • 상환방법 : <u>5년 거치 5년 균분상환</u> <p>라. <u>변소개량 융자금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융자금 : <u>무이자</u> • 상환방법 : <u>3년 거치 5년 균분상환</u> <p>마. <u>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율 : <u>무이자</u> • 상환방법 : <u>3년 거치 5년 균분상환</u> <p>2. 및 3.(생략)</p>	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주택개량사업(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)</u></p> <p>가. 이율 : <u>제정부용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</u></p> <p>나. 상환방법 : <u>5년 거치 15년 체중상환</u></p> <p>2. 및 3.(현행과 같음)</p>